

의안번호	제 210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9월 일 (제342회)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8월 2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8월 2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종료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」를 폐지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 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조례 발취

□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삭제

③ 위원회는 재정적 지원 요청시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대회 종료후 대회기간이 속한 해의 연말까지 사업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